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

기획조정실 법무송무부

제정 2022. 5. 27. 지침 제365호
개정 2022. 11. 25. 지침 제3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소송의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포함한다) 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전반에 관한 관리의 근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 기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을 말한다.
2. “소송담당직원”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는 기타소송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 또는 변호사 선임, 소송진행 결과의 확인 및 보고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소송관리를 위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심사평가원 「직제규정」에 따라 법무·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속한 실을 말하며, “주관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는 기타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지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대상은 심사평가원이 승소한 경우 및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소송으로서 소송비용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소송비용회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심사평가원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송비용회수의 절차

제5조(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신청 등) ① 심사평가원이 당사자 등이 된 소송의 주수행
변호사와 소송담당직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담당한다(심사평가원이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피신청인 지위를 포함한다).

② 심사평가원이 당사자 등이 된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의 소송담당직원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③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소송담당직원은 소송비용 회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라 회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소송담당직원은 해당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후 즉시
이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소송담당직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이 확정되면 결정정본을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등의 예외) ① 소송담당직원은 행정소송에서 심사
평가원이 당사자 등이 된 사건의 승소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1. 소송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심사평가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3. 소송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5. 공익소송이나 그 밖에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

6. <삭제>

② 민사소송 또는 기타소송의 결과 심사평가원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서 소송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가 적절하다고 의결한 때에 한하여 소송비용 회수포기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제7조(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담당직원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소송담당직원은 소송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 받기 위한 최고,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담당직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 등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압류할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강제집행 소요기간이나 경비 등에 비추어 회수할 금액이 경미한 경우
4. 기타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송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소송담당직원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수포기한 금액에 관한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제3장 소송비용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5.>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감사실장 및 1급 직원 중 주관부서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2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으로 한다.
 - 1.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 2.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당해 심의안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법규 및 소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1.25.>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포기에 대한 적정여부
- 2.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실익이나 강제집행 포기의 적절성 유무
- 3. 그 밖에 소송비용 회수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대면회의의 심의 및 의결 시에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 촉탁변호사 또는 소송담당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 의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주관부서에 보관한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해 심의·의결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소송비용의 지급) 소송담당직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1. 소송상대방이 발행한 청구서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3.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소송상대방 통장사본
4. 소송상대방의 신분증 사본
5. 심사평가원이 정하는 정당 영수증 등

제14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지침 제365호, 2022. 5.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기타소송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침 제382호, 2022. 11. 25.>

이 지침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의 결 서

대상 안건					
1. 주문 :					
2. 제안사유 :					
3. 의결내용 :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대상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면 의 결 서

대상 안건				
1. 주문 :				
2. 제안사유 :				
3. 의결내용 :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대상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의결함.				
20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심의결과	서 명	비고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별지 제3호서식]

비밀유지서약서

- 소속 :
- 직 급 :
- 성 명 :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소송비용 회수 심의안건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